

#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50
----------	------

2017년 11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0. 16.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7. 10. 24.
3. 상정일자 : 제277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11월 2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 1. 제안이유

- 가. 쪽방상담소는 서울시 5개 쪽방밀집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시설로,
- 나. 기존 구립·법인운영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시립시설로의 전환을 통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단체)을 서울시가 직접 수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민간위탁 기간 : 5년 이내(2018년 협약일 ~ 2023년)
  - 위탁기간 종기를 시설물(건물) 임차기간으로 한정
  - 용산구 동자동 소재 시설은 용산구와 맺은 기존 사무위탁 협약을 존중하여 2019년 수탁자 선정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 운영
- 위탁사무 내용
  - 행정지원 : 수급자(기초, 의료) 지원, 말소 주민등록 복원, 주소지 등록 등
  - 기초생활지원 : 민간자원(후원) 등의 연계를 통한 식품·생필품 지원, 이 미용·목욕·세탁 등의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의료지원 : 보건소·민간자원과 연계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
  - 자활·자립지원 : 자활작업장 운영, 신용회복,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등
  - 정서안정 및 자긍심 고취 : 생활애로상담, 명절행사, 문화행사 등
  -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등 기타 쪽방촌 주민의 주거 안전 환경 향상을 위한 사항
- 위탁시설 개요(총 5개소)

소재지		종로구 돈의동	종로구 창신동	중구 남대문로5가	용산구 동자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대상주민		548명	329명	789명	1,068명	548명
규모	직원수	6명	5명	6명	7명	5명
	시설면적	158.48㎡	168.5㎡	100㎡ 이상	132㎡	100㎡ 이상
시설물 확보		자치구 공유재산 임차		민간건물 임차		
비 고		기존 소재지		이전	기존 소재지	이전

- ※ 시설물은 자치구 또는 민간 소유 건물을 임차하되, 사업성과와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市 소유 건물을 확보하여 전환 추진
- 소요예산(안) : 2,387백만원(2018년, 전액 시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2017.9.20.
- ※ 조건부 적정 : 민간 위탁기간 종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적정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선정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의 필요성
  - 2005년 이후 쪽방상담소 운영비 전액을 시비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까지 자치구와 단순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구립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치구들의 규정 미준수와 관리 소홀,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쪽방촌 주민 보호 및 자활지원 사업에 많은 제약요인 존재
    - ※ 2012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쪽방촌을 사회복지시설로 편입
  - 현재 운영지원 중인 5개 쪽방상담소의 시립화를 통해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단체)을 서울시가 직접 수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생활 안정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노숙인급식시설: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

6. 노숙인진료시설: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노숙인복지시설의사업내용등)①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쪽방상담소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노숙인시설의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재활·자립과 사회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등) 제1항 제3호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기존의 예산 과목 변경(사회복지사업보조 → 민간위탁금)

※ 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필요(시장 제출 예산안에 반영됨)

다. 합 의 : 쪽방상담소 관할 자치구의 시립시설 전환 동의('17. 6. 2 ~ 6.30)

###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동의안의 취지

- 본 동의안은 서울시 5개 쪽방밀집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쪽방상담소를 기존 구립·법인운영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시립시설로 전환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단체)을 서울시가 직접 수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sup>1)</sup>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2 민간위탁 추진 개요 및 경위

- 쪽방상담소는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서울시 쪽방밀집지역에 총 5개소가 설치되고 지원되어 왔음. 2000년 시장방침으로 쪽방상담소의 설치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구분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서 쪽방상담소를 지원 및 관리해 왔으며 운영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함.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쪽방상담소 사업 연혁(서울시 자료 참조)

◇ '99. 12월 : 대통령 지시사항

- 쪽방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후원·격려하는 차원에서 행정·재정적 보조

◇ '00. 1월 : 쪽방상담소 설치 계획 수립(市)

- '00. 3월~'03. 4월, 5개 쪽방상담소 설치 또는 인증
- 민간법인, 종교시설들이 설치하고, 자치구와 사무위탁 계약 체결

◇ '11. 6월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12. 6월, 동법 시행규칙으로 “쪽방상담소”를 정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 '13. 1월~6월, 5개 쪽방상담소 각기 관할 자치구에 사회복지시설 신고

- 2012년 6월부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동법 시행규칙에 쪽방상담소가 노숙인복지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서울지역 5개 쪽방상담소 모두 2013년 각 해당 자치구에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함.
- 쪽방상담소 운영기관은 각 자치구에서 선정하여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서울시 확인 결과 운영기관 선정시 서울시 추천 심의위원을 참여토록 한 서울시 방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탁기간 규정 미준수(중구, 용산구), 위수탁계약 부재(영등포구, '12년 이후), 서울시와 협의 없이 자치구 조례에 구립시설로 포함(중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 또한 중구 소재 남대문지역상담센터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추진된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대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쪽방상담소 이전

시 사유지 내 무허가 건물에 무단 입주하여 쪽방상담소 시설 최소 요건인 92㎡에 미달(67㎡)되고, 화장실·샤워실·세탁장 등 기본적인 시설 미비, 소방시설법 기준 미달로 화재 등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등 주민 편의 및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음. 그리고 영등포 쪽방상담소의 경우에는 사무공간을 운영법인에서 다른 시설과 공유하고 있어 독립 공간 및 주민편의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서울시는 이러한 쪽방상담소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쪽방상담소 운영방식 개선 계획(자활지원과-7525, 2017.6.9.)을 마련하여 쪽방상담소의 시립시설 전환 또는 구립·법인운영시설 존치 시 자치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4개 자치구 5개 쪽방상담소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모두 시립시설 전환 의견을 제출한 상황임.

**※ 쪽방상담소 시립시설 전환 관련 추진 경과**

- ◇ '17. 6. 9 : 쪽방상담소 운영방식 개선 계획 수립 및 자치구 의견 조회
  - 시립화하는 경우 : 기존과 같이 전액 시비 보조금 지원
  - 현행 법인·구립 시설 존치 : 자치구 분담금 부담
- ◇ '17. 6. 30 : 쪽방상담소 관할 4개 자치구 모두 시립화 의견 제출

- 서울시는 쪽방상담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 쪽방상담소를 모두 시립시설로 전환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단체)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시설 설치를 통해 합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임.



###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사회복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쪽방상담소를 노숙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쪽방상담소의 설치·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 할 수 있으며,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특수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온 쪽방 밀집지역 주민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쪽방 밀집지역과 그 주민의 특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쪽방상담소 운영을 민간위탁 사무 대상으로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나. 민간위탁 방식의 적정성 검토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쪽방상담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행정지원 : 수급자(기초, 의료) 지원, 말소 주민등록 복원, 주소지 등록 등
  - ② 기초생활지원 : 민간자원(후원) 등의 연계를 통한 식품·생필품 지원, 이미용·목욕·세탁 등의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③ 의료지원 : 보건소·민간자원과 연계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
  - ④ 자활·자립지원 : 자활작업장 운영, 신용회복,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등
  - ⑤ 정서안정 및 자긍심 고취 : 생활애로상담, 명절행사, 문화행사 등
  - ⑥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등 기타 쪽방촌 주민의 주거 안전 환경 향상을 위한 사항
- 상기와 같이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는 쪽방 밀집지역 주민에 대한 상담, 자활·자립지원, 민간자원 연계, 주거 안전 환경 향상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 그 특성상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쪽방상담소 운영을 직영방식과 비교할 때,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 연계를 통한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임.
  - 서울시에서는 쪽방상담소를 운영하거나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들이 대부분 15년 이상 쪽방 주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 운영 과정에서의 배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쪽방 주민을 위한 의료·생필품·식품 지원 및 각종 자원봉사활동 등이 상당부분 감소되어 쪽방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쪽방 밀집지역 주민의 상담, 자활·자립지원, 민간자원 연계, 주거 안전 환경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야 하는 쪽방상담소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그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영방식보다는 해당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 및 전문적 서비스 기술을 지닌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장이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쪽방상담소는 4개 자치구 5개소로, 쪽방 밀집지역 특성에 따라 종로구에는 2개의 쪽방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근 지역에 여러 개의 시립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운영중인 쪽방상담소 시설은 현재 자치구 공유재산 또는 민간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에 따른 시립시설로의 전환이 결정될 경우 각 시설별로 이전 시설을 별도로 정할 계획에 있음.

### 〈쪽방상담소 운영 현황〉

구별	밀집지역(주민수)	상담소명	운영기관	소재지	개소일	시설물		위탁기간	시설성격
						형태	규모		
종로구	돈의동 (548)	돈의동 사랑의쉼터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종로구 수표로 22길 22	00.3.25	구청 복지관	158㎡	15.1.1~17.12.31	법인
종로구	창신동1동 (329)	종로구 동대문 쪽방상담소	(사)복우리모두복지재단	종로구 종로50라길 31	03.4.22	구청 소유건물	168㎡	15.1.1~17.12.31	법인
중구	연세빌딩 남대문경찰서 중림동 (789)	남대문 지역상담센터	(사)푸른나눔	중구 후암로60길21	00.3.28	시유지 무단점유 무허가 축조물	67㎡	16.1.1~20.12.31 (17.3.31 운영권반납)	구립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1,068)	서울역 쪽방상담소	(사)빅이슈코리아	용산구 후암로57길 37	01.1.4	민간건물 구청임대	132㎡	16.2.1~19.1.31	법인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문래1동 (548)	영등포 쪽방상담소	(사)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3	01.3.16	자가	- (독립공간부재)	11.1.1~11.12.31	법인

※ 서울시 자료 참조

-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sup>2)</sup>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민간위탁 기간 종기를 제한하는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쪽방상담소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종기를 시설물(건물) 임차기간으로 한정하였을 뿐 아니라, 용산구 동자동 소재 시설은 용산구와 맺은 기존 사무위탁 협약을 존중하여 2019년에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이것은 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을 위반하여 계약 기간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다. 종합 검토

- 서울시의 쪽방상담소 운영의 민간위탁은 관련법령 및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쪽방상담소가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운영되고는 있지만, 인근 지역에 여러 개의 시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임의로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의 준수가 요망된다 할 것임.

<참고자료>

**서울시 소재 밀집지역 쪽방과 주민수의 변화 추이**

구 분	계	종로구 돈의동	종로구 창신동	중구 남대문로5가	용산구 동자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중구 중림동	동대문구 전농1동	비고	
'99년 쪽방	3,450	1,000	300	800	1,000	350	-	-	한국도시연구소 최지훈 등	
'99년 쪽방	4,050	1,000	300	1,950 (양동지역)		800	-	-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추정)	
'02년	쪽방	3,855	651	595	929	892	788	-	-	서울연구원 「쪽방 사람들」
	주민	2,824	430	364	844	728	458	-	-	
'02년	쪽방	3,922	685	580	929	977	751	-	-	서울시 자체 자료
	주민	3,269	451	272	826	1,007	713	-	-	
'04년	쪽방	4,090	685	597	1,193	1,061	554	-	-	
	주민	3,611	571	456	1,004	1,087	493	-	-	
'06년	쪽방	3,598	758	545	761	1,033	501	-	-	
	주민	3,539	687	407	751	1,130	564	-	-	
'08년	쪽방	3,557	770	534	737	975	541	-	-	
	주민	3,240	716	332	729	885	578	-	-	
'10년	쪽방	3,508	757	527	708	975	541	-	-	
	주민	3,263	690	300	755	907	611	-	-	
'12년	쪽방	3,487	766	497	708	975	541	-	-	
	주민	3,197	676	326	717	873	605	-	-	
'14년	쪽방	4,360	755	547	818	1,319	541	147	233	
	주민	3,681	635	354	708	1,099	603	131	151	
'16년	쪽방	4,061	745	521	673	1,259	541	191	131	
	주민	3,236	555	328	590	1,015	520	171	57	

2014년 서울시가 쪽방밀집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동대문구 전농1동과 중구 중림동 지역을 쪽방밀집지역으로 새로 편입. 2014년에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쪽방 지역내 고시원을 포함시키고, 중림동, 전농1동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쪽방 수와 주민이 각각 870여개, 480여명 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 쪽방 주민 중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는 일시거주자를 집계에서 제외하여 주민수가 440여명 감소하였고, 쪽방 건물의 멸실 또는 용도 전환으로 인해 쪽방 수도 300여개 감소

※ 출처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쪽방, 쪽방촌, 쪽방상담소(쪽방촌 실태조사를 통한 쪽방상담소 기능 재정립 방안)”,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2017.9.)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시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할 것

#### V. 토론요지 : 「없음」

####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50
----------	------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쪽방상담소는 서울시 5개 쪽방밀집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시설로서
- 나. 기존 구립·법인운영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시립시설로의 전환을 통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단체)를 市가 직접 수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쪽방상담소는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로 '00.3월 ~ '03.4월 중 서울시에 5개가 설치되었고, '12.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정규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체계에 편입되었음
- '05년 이후 쪽방상담소 운영비 전액을 시비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현재까지 자치구와 단순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구립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치구들의 규정 미준수와 관리 소홀,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쪽방촌 주민 보호 및 자활지원 사업에 많은 제약요인이 존재함
- 현재 운영지원 중인 5개 쪽방상담소의 시립화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행정지원 : 수급자(기초, 의료) 지원, 말소 주민등록 복원, 주소지 등록 등
- 기초생활지원 : 민간자원(후원) 등의 연계를 통한 식품·생필품 지원, 이미용·목욕·세탁 등의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의료지원 : 보건소·민간자원과 연계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
- 자활·자립지원 : 자활작업장 운영, 신용회복,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등
- 정서안정 및 자긍심 고취 : 생활애로상담, 명정행사, 문화행사 등
-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등 기타 쪽방촌 주민의 주거 안전 환경 향상을 위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소재지		종로구 돈의동	종로구 창신동	중구 남대문로5가	용산구 동자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대상주민		548명	329명	789명	1,068명	548명
규모	직원수	6명	5명	6명	7명	5명
	시설면적	158.48m <sup>2</sup>	168.5m <sup>2</sup>	100m <sup>2</sup> 이상	132m <sup>2</sup>	100m <sup>2</sup> 이상
시설물 확보		자치구 공유재산 임차		민간건물 임차		
비 고		기존 소재지		이전	기존 소재지	이전

※ 시설물은 자치구 또는 민간 소유 건물을 임차하되, 사업성과와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市 소유 건물을 확보하여 전환 추진

마. 민간위탁 기간 : 5년 이내(2018년 협약일 ~ 2023년)

- 위탁기간 종기를 시설물(건물) 임차기간으로 한정
- 용산구 동자동 소재 시설은 용산구와 맺은 기존 사무위탁 협약을 존중하여 2019년 수탁자 선정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항목	세부항목	적요 등 (단위 : 천원)	금액(단위:천원)
계			2,387,037
인 건 비	급여	5개소 29명 1,333,238천원	1,572,376
	사회보장비	5개소 29명 233,588천원	
	복지포인트	5개소 29명 5,550천원	
관리운영비	기본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76,660천원	157,727
	일반사업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81,067천원	
안 전 점 검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전기 625개소, 가스 305개소 48,902천원	48,902

시 설 비	임차보증금	3개소 - 남대문로5가 200,000천원 - 동자동 30,000천원 - 영등포 200,000천원	604,032
	임차비(월세)	5개소 - 돈의동 1,088천원 - 창신동 944천원 - 남대문로5가 24,000천원 - 동자동 24,000천원 - 영등포 24,000천원	
	이전 및 리모델링비	2개소 - 남대문로 50,000천원 - 창신동 50,000천원	
수탁자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4개소(동자동 제외) 선정심의 위원 수당 4,000천원	4,000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민간 위탁기간 종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적정

자. 추진경과

- '17. 6. 9 : 쪽방상담소 운영방식 개선 계획 수립 및 자치구 의견 조회
  - 시립화하는 경우 : 기존과 같이 전액 시비 보조금 지원
  - 현행 법인·구립 시설 존치 : 자치구 분담금 부담
- '17. 6. 30 : 쪽방상담소 관할 4개 자치구 모두 시립화 의견 제출
- '17. 9. 20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제9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나. 예산조치

- 기존(예년)의 예산 과목 변경

- 대 상 : 인건비, 관리운영비, 안전점검

- 금 액 : 1,779,005천원

- 예산과목 : (기존) 사회복지사업보조 → (변경) 민간위탁금

- 이전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협의 중

- 대 상 : 시설비, 수탁자 선정

- 금 액 : 608,032천원

다. 합 의 : 쪽방상담소 관할 자치구의 시립시설 전환 동의  
(’17. 6. 2 ~ 6.30)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자활지원과 자활지원팀 기재일 (☎ 2133-7490)